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정관

제 정 2007.10.05.
일부개정 2009.03.19.
일부개정 2009.12.22.
일부개정 2010.09.27.
일부개정 2010.11.22.
일부개정 2011.08.31.
일부개정 2012.11.29.
일부개정 2013.07.09.
일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14.05.13.
일부개정 2014.12.04.
일부개정 2017.04.07.
일부개정 2017.10.19.
일부개정 2019.04.10.
일부개정 2019.09.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07.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구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고하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구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규정의 제정)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자체내규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복지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단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09.27>

② 임원(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7>

③ <삭제 2010.09.27>

④ 비상임이사는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9.27>

1. 세무 및 회계 전문가 <신설 2010.09.27>
2.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신설 2010.09.27>
3. 경영·컨설팅 전문가 또는 기타 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가
<신설 2010.09.27>

⑤ <삭제 2010.09.27>

⑥ 감사는 구의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9.29.>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

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과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0.09.27>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당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소속 공무원(구의회위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임원후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0.09.27>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비상임이사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09.27.>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단, 상임이사가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는 위촉시까지 이사장이 행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고, 정원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그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31, 2012.11.29>

② 공단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29., 2014.12.04., 2019.09.29.>

③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7.10.19.>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4.10.>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취업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29.>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9.27>

제17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감사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9.27>

제18조(임·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과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시직 직원의 경우는 별도규정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18조의2(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구청장 또는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신설 2013.07.09.>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공단이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공단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공단체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2.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이사장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9.27>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공단체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 위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1조(운영규정 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사 업

제32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차장(거주자, 공영 등)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 <개정 2019.09.29.>
2.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9.09.29.>
3.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9.09.29.>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3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사업의 재위탁) 공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의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무회계

제3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예산서를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9.>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9.29.>

제4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 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수입금의 처리) 공단의 사업별 수입금은 구의 세입에 납입한다.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의 결산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 보전
2. 이익준비금 적립
3. 구 세입에의 납입
4. 임의적립금 납입
5.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보전한다.

1. 임의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결손금으로 이월

제43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관리) 공단은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재산의 무상사용)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47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9.29.>

제48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영 제44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9조(경영평가) ① 공단의 경영평가는 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되,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거나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9.27>

② 이사장은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 자문 및 권고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9.>

1. 임직원에게 대한 감봉, 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개정 2010.09.27>

제50조(감독 및 검사) 공단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구청장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52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조례, 상법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구가 출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공단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정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원구의 일반회계에 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9.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8.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1조제2항 “별표2(정원표)”를 정관 제12조제1항 “별표2(정원표)”로 한다.

부 칙 <2013.07.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와의 관계) 시행일 현재 공단 단규에서 사용중인 공단의 명칭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4.05.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4.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원구청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개정정관은 2020. 1.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12조제1항 관련) <개정 2009.12.22., 2010.11.22., 2012.11.29., 2014.12.04., 2017.04.07., 2019.04.10., 2019.09.29.>

기 구 표



[별표 2] (제12조제1항 관련) <개정 2009.03.19, 2009.12.22, 2010.11.22>
 <삭제 2011.08.31> <신설 2012.11.29.> <개정 2013.07.09., 개정 2014.05.13.,
 개정 2014.12.04., 개정 2017.04.07., 2019.09.29.>

정 원 표

구 분		총계	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60	2	2	56				
임원		2	2						
일반직	행정직	58		2	56				
	기술직								
	지도직								